

고유번호증

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)

고유번호 :

단체명 :

대표자성명 :

대표자주민등록번호 :

소재지 :

대표자주소 :

교부사유 :

(주의사항)

- (1)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(2)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2008년 02월 20일

서부산세무서장 인

注: 凡不能提供老字號的材料
單位, 情惠送送各種
的材料 (以可持, 自批材料)